

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조례내용이 비현실적으로 존치의의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
하는 것임

주요골자

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포
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74. 6. 7 제정된 조례로서 시행실적이
없으므로 동조례 폐지

첨 부

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1부

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